

2010년 2차(9월 11일) 경찰학개론 출제경향분석

총론(12문항)

경찰의 개념(下)
 경찰의 기본적 임무(下)
 경찰부패원인(下)
 경찰역사(下)
 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上)
 경찰기관(경찰청장, 경찰위원회, 지방경찰청장)(下)
 공직의 분류(下)
 직권면직사유(下)
 경찰관직무집행법(下)
 경찰의 예산(下)
 하자의 승계(행정행위)(上)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下)

각론(7문항)

생활안전경찰(범죄의 예방과 통제)(下)
 경비경찰(인질사건에 대한 syndrome)(下)
 보안경찰(보안관찰처분)(下)
 외사경찰(외국인의 입국금지사유)(下)
 외사경찰(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공조거절사유)(中)
 교통경찰(연습운전면허)(中)
 정보경찰(공직선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정당법)(上)

기타(1문항)

사회현상(下)

1단계 이론과정(1순환/2순환), 2단계 심화특강과정, 3단계 최종마무리과정(5/4/3/2/1)에서 다루었던 문제와 내용은 하 또는 중으로 잡고, 다루지 못한 내용이나 다루었다하더라도 응용의 정도가 심화된 문제나 내용은 상으로 분류했습니다.

- 이번 문제의 특징은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 규정 중심으로 기간을 물어보는 명명백백한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 경찰관련법령의 중심으로 출제되고, 하자의 승계를 묻는 판례, 정당법의 정당등록취소사유 등을 출제한 것으로 보아 아마 법을 전공한 분이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 그리고 1차(3월 13일) 시험과 마찬가지로 외국경찰 파트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출제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색깔과 포인트가 다른 점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기출문제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논란이 없는 간단 명료한 기본적인 문제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다수 출제된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기출문제(채용과 승진기출문제) 및 기본서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꾸준히 반복하고 숙지하여 응용력을 높인다면 문제의 색깔이 달라지더라도 충분한 대비가 될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합시다! 그것이 넓은 경찰학개론을 정복하는 지름길이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1. 경찰개념의 형성 및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고대에서의 경찰개념은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시국가의 국가작용 가운데 ‘정치’를 제외한 일체의 영역을 의미하였다.
- ㉡ 경찰국가시대에는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보안경찰을 포함한 영업·위생·건축 등의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일반행정기관의 사무로 이관하는 이른바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 ㉣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인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된 것은 뮐튼판결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해설

- ㉠ 정치를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
- ㉡ 보안경찰을 제외한 협의의 행정경찰이 비경찰화의 대상
- ㉢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에서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인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뮐튼판결은 처음으로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다.

2. 경찰의 기본적 임무 중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의 안녕이란 국가 등 집단과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 개인과도 관련되어 있는 이중적 개념이다.
- ② 위험은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가벌성의 범위 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경찰활동이 가능하다.
- ④ 사유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④

해설

공공의 안녕과 관련하여 경찰은 인간의 존엄성 명예 생명 건강 자유의 개인법익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도 보호하여야 한다.

3. 경찰부패(일탈)와 관련된 여러 견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셔먼의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에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이론이다.
- ② 월슨은 ‘전체사회가설’에서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 ③ ‘내부고발(휘슬블로잉)’이란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에 알리거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침묵의 규범’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 ④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제시한 ‘구조원인가설’은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정답 ④

해설

경찰부패의 원인과 이해

1) 전체사회가설

- ① 전체사회가설은 미국 시카고 경찰의 부패원인을 분석하던 월슨이 내린 결론으로, 사회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으로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하다. 월슨은 시카고 경찰의 부패를 ‘경찰은 시카고 시민에 의해서 부패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 ② 즉, 부패는 해악이 없고 좋은 의도를 가진 관행으로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명백한 부패유형으로 발전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2) 구조원인가설

- ① 신참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으로 이런 부패의 관행은 경찰관들 사이에서 침묵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제시한 이론으로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사회화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것이다.
- ② 이 견해에 따르면, 부패는 경찰조직 내에서 일탈적인 행위가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생겨난다. 신참 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부패의 관행은 경찰관들 사이의 침묵의 규범 등에 의해 보호되고 조장된다.

3) 썩은 사과가설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그러므로 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보다는 개인의 결함으로 보고 있다.

4) 결 론

하지만 부정부패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위의 어느 한 가지 가설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패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나타난다.

4. 내무부 산하의 치안국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은?

- ① 경찰관 해외주재관 제도의 신설
- ② 경찰병원의 설치

- ③ 중앙경찰위원회의 설치
- ④ 경정 경장의 2계급 신설

정답 ③

해설

중앙경찰위원회는 미군정 시대(1947), 경찰위원회는 경찰청 시대(1991)

***경찰조직의 주요 연혁**

- 1949년 10월 경찰병원 설립
- 1955년 3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설립
- 1966년 7월 경찰관 해외주재관 제도 신설
- 1969년 1월 경정 및 경장 2계급 신설, 2급지 경찰서장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격상
- 1974년 12월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 1979년 12월 경찰대학 설치법의 제정(1981년 개교)
- 1991년 8월 1일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승격, 시도의 치안국(지방경찰국)을 지방경찰청으로 승격
- 1996년 8월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로 이관
- 1999년 5월 경찰서에 청문감사관제 도입
- 1999년 12월 운전면허시험장을 '책임운영기관화'하여 경찰청장 직속으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신설
- 2000년 9월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
- 2005년 7월 경찰청 생활안전국에 여성청소년과 신설
- 2005년 12월 경찰병원의 책임운영기관화
- 2006년 3월 경찰청 외사관리관을 외사국으로 확대·개편
- 2006년 7월 제주도 자치경찰 출범
- 2006년 10월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치안감으로 격상
- 2006년 10월 경찰청 수사국 내에 '인권보호센터'신설

5. 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 채용후보자명부 및 채용후보자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장 유효기간은 2년이다.
-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적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한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입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교육성적순위에 의한다.
- ㉣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①

해설

경찰공무원법

제9조(채용후보자명부등)

-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경찰대학을 졸업한 자 및 경찰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적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②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한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교육성적순위에 의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8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는 임용예정계급별로 작성하되, 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만을 등재한다.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에의 등재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의 결원보충에 있어서 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보자수가 결원 수에 부족하고, 인사행정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원된 계급에 관하여 다른 임용권자가 작성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해당 기관의 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로 보아 해당 자치경찰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
|---|
| ㉠ 경찰청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
㉡ 경찰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업무수행에 있어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해설

- ㉠ ‘경찰청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경찰법 제11조 4항)’의 규정은 경찰청장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1997년 1월에 신설되었는데, 이 조항이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즉, 정당법 제6조 1호 및 3호에 열거된 공무원, 특히 직무의 독립성이 강

조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과 감사원장 등의 경우에도 경찰청장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유독 경찰청장에 대하여만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정당설통 및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자 평등원칙에도 위반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하였다.

- ㉔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소속 하에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서를 둔다(경찰법 제2조 2항). 하지만,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관할구역 안의 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 및 소속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7. 공직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급제는 인간중심의 분류방법으로 관료제의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 ② 계급제는 폐쇄형 충원방식을 통해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기여한다.
- ③ 직위분류제는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유용하나,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다.
- ④ 직위분류제는 시험 채용 전직 등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한다.

정답 ③

해설

직위분류제를 채택했을 때, 직책에 따른 전문화로 전문가 간의 협조와 조정 및 의사소통이 곤란하나, 권한과 책임의 한계는 명확하다.

8.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 중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 ① 당해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 ③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④ 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정답 ④

해설

***직권면직사유**

- ㉑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 ㉒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㉓ 직위해제로 인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징계위원회의 동의 필요)
- ㉔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자로서 다 음에 해당할 때(징계위원회의 동의 필요)
 - (가) 지능저하 또는 판단력의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나)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에 당하여 고의로 직무수행을 기 피 또는 포기하는 경우

- ㉔ 직무수행에 있어서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할 때(징계위원회의 동의 필요)
- (가) 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에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나)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
- ㉕ 당해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9.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직무의 범위에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관한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
-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유치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근거규정이 있다.
- ③ 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정답 ①

해설

경찰의 직무범위를 정한 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	경찰법 제3조 (경찰의 임무)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한편, 일본의 경찰법(제2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범죄의 진압 및 수사, 교통의 통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경찰의 직무로 명문상 규정하고 있어, 판례를 통하여 정보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0. 경찰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예산제도에 있어서 일몰법이란 특정의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 경과하면 의무적 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것으로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 ② 계획예산(PPBS)제도는 회계책임이 명확해지고,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준예산의 지출용도에 포함된다.
- ④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장관 항간에 예산금액을 상호 이용하는 것을 예산의 전용이라 한다.

정답 ③

해설

- ① 일몰법이란 특정의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 경과하면 의무적 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것으로, ZBB가 행정부 예산편성에 관련된 행정적 과정이라면, 일몰법은 예산에 관한 심의 통제를 위한 입법적 과정, 일몰법은 행정의 최상위계층의 주요정책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나 ZBB는 조직의 상층구조뿐만 아니라 중하층구조까지 관련되고, 일몰법은 검토의 주기가 3년 내지 7년의 장기이나 ZBB는 매년 실시되므로 단기적이다.
- ② 품목별예산제도의 장점
- ④ **예산의 이용**은 예산편제의 입법과목인 장 관 항간의 상호사용을 말한다.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부분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장 관 항간에 예산금액을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인 예산의 세항 또는 목간의 경비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호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예산불성립시를 대비하여 준예산제도를 취하고 있다. ‘준예산’이란 국회의 의결이 불필요하고, 경비지출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지출항목은 i)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유지 운영비(공무원 보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경비), ii) 법률상 지출의무이행에 관한 경비 및 iii)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에 관한 경비에 한정한다.

11. 다음 중 하자의 승계가 **부정**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대집행절차에 있어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하자와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간의 경우
- ②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간의 경우
- ③ 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의 하자와 안경사면허취소처분 간의 경우
- ④ 대학원에서의 수강거부처분의 하자와 수료처분 간의 경우

정답 ④

해설

하자(위법성)의 승계

1. 의의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행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논의의 전제

이러한 논의의 전제는 첫째 선행행위와 후행행위는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일 것, 둘째 선행행위에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인 하자가 존재하지만 후행행위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을 것, 셋째 선행행위의 하자를 더 이상 다룰 수 없을 것(불가쟁력 발생), 넷째 후행행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후행행위에 별도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다투면 되기 때문이다.

3. 필요성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이나 실효성 차원에서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선행행위의 위법을 후행행위단계에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선행행위의 위법을 후행행위 단계에서 다투면 된다고 생각하므로, 이러한 상대방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4. 승계 여부

(1) 통설과 판례의 입장

1)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선행행위가 후행행위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 i) 조세채납처분에서의 독촉 압류 매각 충당(청산)의 각 행위 사이
- ii) 행정대집행에 있어서의 계고 통지 실행 비용징수의 각 행위 사이
- iii) 독촉과 가산금 증가산금 징수처분
- iv) 기준지가 고시처분과 토지수용처분
- v)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후행의 매각처분
- vi) 국립보건원장의 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안경사면허취소처분
- vii) 개별공시지가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수인한도론) ⇒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나 하자의 승계를 긍정하는 예외적인 판례이다.
- viii) 한지의사시험자격인정과 한지의사면허처분
- ix) 암매장분묘개장명령과 계고처분

2) 하자의 승계가 부정되는 경우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i) 경찰관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 ii) 사업인정(택지개발계획승인)과 토지수용재결처분
- iii)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과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처분
- iv) 대학원에서의 수강거부처분과 수료처분
- v)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처분과 사업개시신고 반려처분
- vi) 과세처분과 채납처분
- vii)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그에 기한 과세처분
- viii)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 ix) 도시관리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 x) 변상판정과 변상명령
 - 감사원의 시정요구결정과 후행 행정처분
 -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지적승인고시처분과 사업계획승인처분 등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외국인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에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④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3. 범죄예방(통제)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범죄자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죄를 행한다고 본다.
- ②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예방이론에 대하여는 개인이나 소규모의 조직체에 의해 수행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③ 일상활동 이론은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행을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4가지 요소로 가치(Value), 이동의 용이성(Inertia), 가시성(Visibility), 접근성(Access)을 들고 있다.
- ④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은 생태학적 이론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합리적 선택이론은 억제이론과 같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므로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근거하고 있고, 범죄자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다. 그리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은 체포의 위험성과 처벌의 확실성의 제고를 통해 가능하다고 한다.

14. 다음 중 인질사건 발생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 항목의 요소와 (나) 항목의 요소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 ㉠ 스톡홀름 증후군 ㉡ 리마 증후군

(나)

- ㉢ 페루 수도 소재 일본대사관에서 발생하였던 투팍아마르 혁명운동 소속 게릴라들에 의해 발생한 인질사건에서 유래되었다.
- ㉣ 심리학에서는 오귀인 효과라고도 한다.
- ㉤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현상으로 이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인질이 인질범을 이해하는 일종의 감정적 입이 이루어져 상호간에 친근감을 갖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 ㉥ 인질범이 인질들의 문화를 학습하거나 정신적으로 동화되어 결과적으로 공격적인 태도가 완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정답 ④

해설

- ㉡ 페루 수도 소재 일본대사관에서 발생하였던 투팍아마르 혁명운동 소속 게릴라들에 의해 발생한 인질사건에서 유래되었다. - ㉡ 리마 증후군
㉢ 심리학에서는 오키인 효과라고도 한다. - ㉠ 스톡홀름 증후군
㉣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현상으로 이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인질이 인질범을 이해하는 일종의 감정이입이 이루어져 상호간에 친근감을 갖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 ㉠ 스톡홀름 증후군
㉣ 인질범이 인질들의 문화를 학습하거나 정신적으로 동화되어 결과적으로 공격적인 태도가 완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 ㉡ 리마 증후군

15. 보안관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상 보안관찰 해당범죄는 내란목적살인죄, 간첩죄, 외환유치죄, 물건제공이적죄 등이 있다.
②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보안관찰 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보안관찰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보안관찰처분은 보안관찰 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16.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②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④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정답 ①

해설

- ①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는 강제퇴거사유에 해당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 가. 일본 정부
 -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17.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규정된 공조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이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형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공조범죄가 요청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 ④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③

해설

제6조 (공조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이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형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5. 이 법에 요청국이 보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18. 연습운전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연습면허와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2종류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 ㉡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단순히 물질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한다.
- ㉣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해설

- ㉠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단순히 물질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선거별 선거기간은 대통령선거는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이다.
- ㉡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이 공포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포일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정당이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①

해설

- ㉡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이 공포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조정의 개시)

-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조정기간)

- ① 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 ㉞한편, 정당이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다.

*정당법

제44조(등록의 취소)

-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도 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20. 사회적 현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 ① 노비즘 - 이웃이나 사회에 피해가 가더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일에는 무관심한 현상
- ② 님비현상 - 자기 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거나 관할권을 차지하려는 현상
- ③ 도넛현상 - 대도시의 거주지역 및 업무의 일부가 외곽지역으로 집중되고 도심에는 공공기관 상업기관만 남아 도심이 도넛 모양으로 텅 비는 현상
- ④ 스프롤현상 - 도시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도시의 교외지역이 무질서하게 주택화로 잠식해가는 현상

정답 ②

해설

1)넙비현상 [Nimby,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서는 안된다는 이기주의적 의미로 통용되는 것으로 산업 폐기물·AIDS환자·범죄자·마약중독자·쓰레기 등의 수용·처리시설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자기 주거지역에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서는 데는 강력히 반대하는 현상이다. 넙비(Nimby)현상은 지역 이기주의로 공공정신의 약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감에 따라 일정지역 거주민이 지역 훼손사업 또는 오염 산업의 유치를 집단으로 거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공단설립이나 원자력발전소, 댐건설은 물론 핵폐기물 처리장, 광력쓰레기장 같은 혐오시설의 설치가 중단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2)핼피현상 [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핼피현상이란 수익성 있는 사업을 내 지방에 유치하겠다는 지역이기주의 일종이다. 원자력 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을 내 이웃에 둘 수 없다는 넙비와는 반대현상이지만 지역이기주의라는 점에서 똑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핼피현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노선을 놓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대립한 것이나 삼성의 승용차 공장의 유치를 기대했던 대구시민들이 부산 신호공단으로 결정되자 삼성제품 불매운동에 들어갔던 것도 대표적인 핼피현상이다. IMF체제 후에도 외국인 투자 유치를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경쟁하고 있는 것도 핼피현상으로 볼 수 있다.

3)노비즘 [nobyism]

이웃이나 사회에 피해가 되더라도 자기에게 바로 손해가 오지 않는 일에는 무관심한 것. 즉 공공장소나 도로 등에 쓰레기를 버리든 말든 상관하지 않지만 내 집 뜰에 버리는 것만은 못봐 주겠다는 것으로 철저한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4)도넛현상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말한다. 도심지의 땅값이 급등하고 공해로 인해 주거 공간으로 부적합하게 되면 주민들은 도시 외곽 지역으로 옮겨간다. 도심엔 공공 기관이나 상업 시설만 남고 일반 주택은 사라져 밤엔 텅 비게 된다. 이같이 도심이 도넛 모양으로 공동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5)스프롤현상 [Sprawl]

도시의 급격한 팽창에 따라 대도시의 교외가 무질서·무계획적으로 발전하는 현상을 말한다. 교외의 도시 계획에 무관하게 땅값이 싼 지역을 찾아 교외에 주택이 침식해 들어가는 이 현상은 토지 이용면에서나 도시시설 정비에 극히 비경제적이다.